

[별지 제7호] <개정 2016. 12. 6., 2024. 7. 1.>

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

2024. 10. 8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담당 부서장)

제 목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 1부
2.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 형 석(인)



작 성 자 : 김보람 과장

전화번호 : 02-2251-7300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

1.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 경력 ¹⁾	자격요건 확인결과
원혜리 (元惠俐)	이사	Y	830802	2024. 10.07	2년 (2026. 10.07)	내부통제 감사 리스크관리	컴플라이언스 팀장,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 임자	2002.02~2008.02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7.12~2017.01 삼일회계법인 Deal Advisory (재무자문) 2017.01~2019.04 미래에셋자산운 용 대체투자리 스크관리팀 (대체투자심사 및 리스크관리) 2019.11~2022.07 이지스자산운 리스크관리실 (부동산 투자심 사 및 리스크관 리) 2022.07~2024.08 현대캐피탈 기업금융심사팀 (기업금융심사 및 리스크관리) 2024.10~現 코람코자산운 용 컴플라이언스팀	적합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
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해임(사임)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(사)임일	해(사)임사유 ¹⁾	비고 ²⁾
홍장혁 (洪章赫)	850214	2024. 07.31	2024.10.07	일신상의 사유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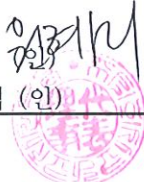
주 1) 해(사)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원혜리 (元惠俐)	직위	이사	
심사항목		심사결과		비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	-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해당사항 없음		-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충족		-
종합 의견 위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해 심사한 결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충족 함				
2024년 10월 7일 코람코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원혜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형석 (인)				

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원혜리 (元惠俐)	직위	이사	
심사항목		심사결과		비고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	-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해당사항 없음		-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충족		-
종합 의견 위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해 심사한 결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 함				
2024년 10월 7일 코람코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원혜리 (인)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형석 (인)				

